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33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

1) 적용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구 분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방역수칙 의무화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외점영업 150㎡ 이상)	① PC방 ② 결혼식장 ③ 장례식장 ④ 학원 ⑤ 직업 훈련기관 ⑥ 공연장 ⑦ 영화관 ⑧ 놀이공원워터파크 ⑨ 오락실밀주방 ⑩ 목욕장업 ⑪ 실내체육시설 ⑫ 이마용업 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⑭ 독서실스터디카페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6)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나.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조정 내용 (단계별 세부내용·기준 붙임 참고)

구 분	내 용
모임·행사*	· 방역수칙 의무화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스포츠 행사	·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 입장
국공립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바. 처분담당자 : 과태료 처분담당자 참고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

가. 처분당사자 :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다.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라.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00 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0:00부터

바. 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1)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시설별 처분부서 참고)
- 2) 과태료 금액 :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아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4)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

5) 부과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6)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7) 지도·점검 및 단속방법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사.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처분에 위반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차. 처분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지방행정주사	신혜진	☎ 888-3334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범현	☎ 888-3374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의곤	☎ 888-3395
아·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지현경	☎ 888-3455
플라텍	재난대응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우철	☎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박선옥	☎ 888-504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육혁신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혜진	☎ 860-0463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김민경	☎ 888-2006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엽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성중학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준	☎ 888-3997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이서현	☎ 888-4084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박종태	☎ 888-3425
약국		지방약무사무관	김진숙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하도훈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1
콜센터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조용준	☎ 888-4471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 40대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 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부산시 15명 미만	부산시 15명 이상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형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태디움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 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7개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 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 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 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후관·후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유소, 보호시설, 집회·사업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매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매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붙임 2**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1호	50	100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500	1,000
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3호	50	100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4호	25	50
카.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5호	15	3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밀접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 과 기 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 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 태 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I 과태료 부과 기준

1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시설(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의무화 대상 +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1 시설·장소 등

※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삭제 불가)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기차·여객기(선)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도시철도,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안)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관리자·운영자 지침	이용자 지침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이용자 지침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 00시 00구 지역 방문자는 '20년 00월 00일 ~ '20년 00월 △△일 까지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참조

③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실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참고> 밸브형 마스크



※ 숨을 내실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마스크 착용법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②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불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시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리(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과태료 금액

①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시행 '20.10.13)

②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예시	행정명령	위반 내용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1	카페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0만원
2	약국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3	500인 이상 행사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과태료 150만원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4	대중 교통	해당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③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II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

①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②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①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포함 사항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과태료 부과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포함 사항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항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⑥ 과태료 부과 시행일

- 행정명령 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2020.11.13.(금) 00시 부터로 명시

III

행정사항

○ 부서(기관)별 조치사항

부 서 명	조 치 사 항	비 고
재 난 대 응 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합동 점검단 구성·운영 및 이행실적 취합	
교 육 청	○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소 통 기 획 담 당 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세 정 담 당 관	○ 세외수입 시스템 권한 승인(감염병 예방법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관 리 감 독 기 관	○ 세외수입 시스템 권한 신청(감염병 예방법 과태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안내 및 홍보 ○ 소관 시설·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점검·단속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단속 시행	

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0. 12. 30.]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1호	50	100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2호	50	100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500	1,000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법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50	100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호	50	100
타.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4호	25	50
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5호	15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0. 9. 1.] [대통령령 제30986호, 2020. 9. 1.,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항공사업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2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비행기
- 나. 헬리콥터
- 다. 비행선
- 라. 활공기(滑空機)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약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속 시 신분증 확인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①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목적)**

-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1. 귀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반사항>

1. 단속일시 : 년 월 일 (:)
2. 위반장소 :
3. 부과금액 : 만원(의견 제출기간 내 납부 시 20% 경감)
4. 산출근거 : 과태료부과기준(제33조 관련) 차(이상) 위반
5. 근거 : 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49조제1항제2호의3, 제49조제1항제2호의4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6. 기타사항 :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예정
7.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관인)

NO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발송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과태료 부과내역

- 단속일시 : 년 월 일 (:)
○ 위반장소 :
○ 부과금액 : 만원(의견 제출기간 내 납부 시 20% 경감)
○ 기타사항 :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예정 ※ 문의 : 구(군) 과(☎000-0000)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관인)

NO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보관용)

□ 부과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과태료 부과내역

- 단속일시 : 년 월 일 (:)
○ 위반장소 :
○ 부과금액 : 만원(의견 제출기간 내 납부 시 20% 경감)
○ 기타사항 :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예정
○ 단속자 : 구(군)청 과 지 성명

의견제출서		
① 예정된 처분		
②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③ 의견		
④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 하실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웹 포스터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